

## 소규모합병 공고

주식회사 엘지화학(이하 “당사”)은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(이하 “엘지생명과학”)과 2016년 9월 1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아래-

### 1. 합병 당사회사

가. 존속법인: 당사

나. 해산법인: 엘지생명과학(본점 소재지: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)

### 2. 합병 방법: 당사가 엘지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함

### 3. 합병 비율

. 보통주식=1 : [0.2606772](당사: 엘지생명과학)

. 우선주식=1 : [0.2534945](당사: 엘지생명과학)

### 4. 합병기일: 2017년 1월 1일

5. 소규모합병: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.

### 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행사절차: 2016년 9월 28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나. 제출기간: 2016년 9월 28일~10월 12일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1) 명부주주: 2016년 10월 12일까지 당사 IR팀에 제출(전화번호: 02-3773-1114)

(송부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22층 IR팀)

2) 실질주주: 2016년 10월 10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(단,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요망)하거나 2016년 10월 12일까지 당사 IR팀에 직접 제출
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소규모합병 반대이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엘지화학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귀하와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 주 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6년 [ ]월 [ ]일

성명:

주민등록번호:

주소:

2016년 9월 28일

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

주식회사 엘지화학 대표이사 박진수